

제 호

양 곡 가 공 업 (☐ 제분업용 ☐ 제조업용) 신 고 증

업 체 명:

대표자성명:

소 재 지:

업 체 구 분:

신고업종:

가공능력(1일 24시간 기준, M/T):

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
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 인